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0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신영대 · 김기표 · 맹성규
문진석 · 염태영 · 전용기
정준호 · 천준호 · 한준호
노종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게 공급하되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경우에는 인구규모 등을 감안 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독자 추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아 임대주택 인수에 관하여 시·도지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발생함.

이에,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시의 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개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사업지구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 내로 한정될 경우 특례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인수”로 하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직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생략)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u>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u>	② ----- ----- ----- ----- ----- ----- ----- ----- ----- ----- <u>시·도지사(사업지구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시 내로 한정될 경우 특례시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u>	2.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인수-</u>

경우: <u>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가 직접</u>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 ⑥ (생략)	---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이 직 접</u> ----- ③ ~ ⑥ (현행과 같음)
---	--